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보다나은 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73호)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고시문 1부.
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전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도시광역교통과장, 물류정책과장, 트라이언소프트(주),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기획재정부장관(환경에너지세제과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주무관 **송태호** 행정사무관 **홍종길** 대중교통과 과장 **김기대** 전결 2018. 12. 28.

협조자

시행 대중교통과-8249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5 팩스번호 044-201-5582 / sth01790@molit.go.kr / 비공개(5)